

구상금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				
사건번호	2016가단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구상금				
원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	피 고	◇◇◇ 외 10명				
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일	2016.5.13., 2016.6.8.	비 고					
사건개요	<p>- 소외 ◆◆◆는 피고 학생들에게 2010년4월부터 7월까지 집단적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0년8월 △△고등학교를 자퇴함. 이후에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2012년6월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.</p> <p>- 판결: 화해권고결정(2015.12.22.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◆◆◆</td> <td>150,000,000원(원금) + 이자(16. 2. 1. ~ 완제일 연 15%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▽▽▽</td> <td>2,000,000원(원금) + 이자(16. 2. 1. ~ 완제일 연 15%)</td> </tr> </table> <p>- 손해배상금 지급: 소외 ◆◆◆, ▽▽▽의 청구에 따라 2016. 1. 27. 다른 피고들에게 판결금 지급 예정 통지 후, 2016. 1. 29. 우리측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6. 2. 23.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.</p>			◆◆◆	150,000,000원(원금) + 이자(16. 2. 1. ~ 완제일 연 15%)	▽▽▽	2,000,000원(원금) + 이자(16. 2. 1. ~ 완제일 연 15%)
◆◆◆	150,000,000원(원금) + 이자(16. 2. 1. ~ 완제일 연 15%)						
▽▽▽	2,000,000원(원금) + 이자(16. 2. 1. ~ 완제일 연 15%)						
주 문	<p>1. 원고에게 2016. 7. 15. 까지</p> <p>가. 피고 ◇◇◇, ◇◇○, ◇◇◎은 연대하여 36,480,000원을,</p> <p>나. 피고 ○○○, ○○□, ○○◇는 연대하여 48,640,000원을 각 지급한다.</p> <p>다. 피고 ◎◎◎, ◎◎□, ◎◎○은 공동하여 2016. 3. 30.까지 300만원, 2016. 7. 29.까지 300만원, 2016. 8. 31.까지 300만원, 2016.9.30.까지 316만원을 지급한다.</p> <p>라. 피고 □□□, □□◇은 공동하여 2016. 3. 30.까지 300만원, 2016. 7. 29.까지 300만원, 2016. 8. 31.까지 300만원, 2016.9.30.까지 316만원을 지급한다.</p> <p>2.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각각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3.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.</p>						

	4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.
청구취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5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2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